

건설제도 알리미 2017. 06

CAK 대한건설협회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
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1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·시행

■ 설계시공 분야 기술자

-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2017.5.22까지 유예된 설계시공 기술자 중 2017.5.22 기준으로 원격교육을 이수 중인 기술자*는 최초 교육 이수기한 자동 연기(교육 이수기한 : 원격교육 신청 당시의 원격 및 집체교육 종료일)

*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신청하였거나 이수 중인 기술자

※ 협회건의 반영

■ 품질관리 분야 기술자

-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2017.5.22까지 유예된 품질관리 기술자는 모두 일괄적으로 최초교육 이수기한 1년 연기(교육 이수기한 : 2018.5.22)

-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2017.5.22인 경우에도 설계시공 이수기한 1년 유예

※ 협회건의 반영

■ 해외출장, 연수, 질병, 출산, 입대 등으로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술자

- 해외출장, 연수, 질병, 출산, 입대 등으로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 신청시 최초 교육 이수기한 연기(교육연기 신청기한 : 2017.8.31)

- 연기사유가 소멸되면 1년 내에 최초교육 이수해야 함

※ 협회건의 반영